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등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국가 범죄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사건에 대해서 다른 기관과의 협력·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며, 인권보호부의 신설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 등 일부 지방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 공공수사부와 외사범죄형사부를 통폐합하는 등 지방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 및 지청 형사부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고, 직접 수사개시를 위한 요건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6. 18. ~ 6. 2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판 및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을 “공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상고사건의 공판에 관한 사항

15. 검찰 사건처리기준 및 양형기준의 정립·개선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상고사건의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13.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14. 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제2항 중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형사제6부·공판제1부”를 “인권보호부·형사제1부·형사제2부

· 형사제3부 · 형사제4부 · 형사제5부 · 공판제1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형사제7부 · 형사제8부 · 조사제1부 · 조사제2부 · 여성아동범죄조사부 · 공판제3부 · 공판제4부 · 공판제5부 및 사무국”을 “형사제6부 · 형사제7부 · 형사제8부 · 형사제9부 · 여성아동범죄조사부 · 공판제3부 · 공판제4부 및 공판제5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수사제1부 · 공공수사제2부 · 형사제9부 · 형사제10부 · 형사제11부 · 형사제12부 및 형사제13부”를 “공공수사제1부 · 공공수사제2부 · 형사제10부 · 형사제11부 · 형사제12부 · 형사제13부 · 형사제14부 및 사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반부패수사제1부 · 반부패수사제2부 · 강력범죄형사부 · 경제범죄형사부 · 공정거래조사부”를 “반부패 · 강력수사제1부, 반부패 · 강력수사제2부, 반부패 · 강력수사협력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공수사제1부”를 “인권보호부, 공공수사제1부”로, “반부패수사제1부, 반부패수사제2부, 조사제1부, 조사제2부, 강력범죄형사부”를 “형사제14부, 반부패 · 강력수사제1부, 반부패 · 강력수사제2부, 반부패 · 강력수사협력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법원이 발부하는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른 지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기록송부 사건(송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 수사중지 기록송부 사건(시정조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4항에서 규정한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형사제1부장 · 형사제2부장 · 형사제3부장 · 형사제4부장 · 형사제5부장 · 형사제6부장 · 형사제7부장 · 형사제8부장 · 형사제9부장 · 형사제10부장 · 형사제11부장 · 형사제12부장 · 형사제13부장 및 형사제14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 또는 기록송부 받은 사건

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 중 고소를 받아 수리한 경제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

다.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부패수사제1부장 및 반부패수사제2부장”을 “반부패·강력수사제1부장 및 반부패·강력수사제2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 및 나목”을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다. 강력·마약 관련 범죄

제1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⑦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수사·처리 및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나. 중요 기업범죄

다. 강력·마약 관련 범죄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중요 범죄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제14조제2항 중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외사범죄형사부”를 “인권보호부·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수사부, 강력범죄형사부”를 “공공·외사수사부, 반부패·강력수사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형사제1부”를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로, “공공수사부, 강력범죄형사부, 외사범죄형사부”를 “공공·외사수사부, 반부패·강력수사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⑤ 공공·외사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형사사건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⑦ 반부패·강력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및 제16조의6 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제2항 중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인권보호부·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형사제1부”를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로, “형사제5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형사제1부장·형사제2

부장·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을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으로, “형사제5부장은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을 “형사제4부장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반부패수사부장은 다음 사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나. 중요 기업범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⑦ 강력범죄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형사사건과 강력·마약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제16조의3제2항 중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형사제6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외사범죄형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인권보호부·형사

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외사범죄형사부(인천지방법검찰청에 한정한다)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형사제6부(수원지방법검찰청에 한정한다), 형사제7부(인천지방법검찰청에 한정한다)”를 “형사제6부”로, “강력범죄형사부”를 “강력범죄형사부(인천지방법검찰청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중 “인천지방법검찰청에 형사제1부”를 “인천지방법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로, “형사제7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수원지방법검찰청에 형사제1부”를 “수원지방법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로,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 강력범죄형사부”를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4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형사제3부장·형사제4부장·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을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형사제3부장·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으로, “인천지방법검찰청 형사제7부장 및 수원지방법검찰청 형사제6부장”을 “인천지방법검찰청 및 수원지방법검찰청 형사제6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3조제8항”을 “제16조의2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3항·제4항 및 제16조의2 제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4항·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⑨ 외사범죄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형사사건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제16조의5제2항 중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인권보호부·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형사제6부·형사제7부·금융조사제1부·금융조사제2부”를 “형사제6부·금융조사제1부·금융조사제2부”로 한다.

제16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형사제6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부·금융조사제1부 및 금융조사 제2부를 둔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6제3항(중전의 제2항) 중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형사제3

부장·형사제4부장·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을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형사제3부장·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으로, “형사제7부장은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형사제6부장은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같은 조 제16항”을 “제13조제16항”으로 한다.

제16조의7제1항 중 “형사제1부”를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로,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형사부”를 “반부패·강력수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반부패수사부장”을 “반부패·강력수사부장”으로, “제16조의6제4항”을 “제16조의6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8제1항 중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특허범죄조사부”를 “인권보호부·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특허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대전지방검찰청 및 울산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를 “울산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로,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장 및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장”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장 및 울산지

방검찰청 형사제5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대전 지방검찰청 형사제5부장”을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장”으로, “제13조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을 “제13조제3항, 제4항, 제13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② 대전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9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을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을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을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을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3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을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3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6조의10 및 제16조의11을 각각 제16조의11 및 제16조의12로 하고, 제16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0(지방검찰청 마지막 순위 형사부의 분장사무) 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의정부지방검찰청 형

사제6부,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대전 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전주 지방검찰청 형사제3부,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 춘천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및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의 분장사무 중 제13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건으로 한정한다.

② 검찰총장은 제1항의 승인과 관련하여 수사단서 확보 과정의 적정성, 사건 내용의 공익성, 검찰 수사의 적합성 및 입증자료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 착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되, 수사 여건과 사건의 성격을 감안하여 다른 전담부서 또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거나 다른 기관에 수사지휘 또는 이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승인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검찰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의11(종전의 제16조의10)제2항 전단 중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으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

13조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의 사항”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형사부장은 제13조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의 사항”을 “각 형사부장은 제13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6조의11(중전의 제16조의10)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지청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각 지청(다만, 복수의 형사부를 두는 지청의 경우에는 마지막 순위의 형사부에 한한다)으로 하여금 제16조의10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지청의 당해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 필요성이 인정될 것
2. 해당 지청 수사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당해 범죄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

⑤ 제16조의10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지청의 검찰총장 승인에 준용한다.

별표 4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란, 부산지방검찰청란 및 광주지방검찰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1부	공공수사지원과
	반부패·강력수사제1부	수사제1과·수사정보과·조직범죄수사과
	반부패·강력수사제2부	수사제2과·수사지원과·마약수사과

	형사제14부 공판제1부 사무국	조사과 공판과 총무과·사건과·집행제1과·집행제2과 ·기록관리과·형사증거과·피해자지원과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형사제3부 반부패·강력수사부 공판제1부 사무국	조사과 수사과 조직범죄수사과·마약수사과 공판과 총무과·사건과·집행과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반부패·강력수사부 공판부 사무국	조사과 수사과 공판과 총무과·사건과·집행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인 관련 적용례) 제16조의10, 제16조의11제4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생 략)	제9조(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공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상고사건의 공판 및 형(재산 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u>	2. <u>상고사건의 공판에 관한 사 항</u>
3. <u>공판 및 형(재산형을 제외한 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대 한 지휘 · 감독에 관한 사항</u>	3. <u>공판</u> ----- ----- -----
4.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u>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 건기록의 보존 · 관리에 관한 사항</u>	<u><삭 제></u>
7. ~ 14. 삭 제 <u><신 설></u>	
15. (생 략)	15. <u>검찰 사건처리기준 및 양형 기준의 정립 · 개선 및 그 운 영에 관한 사항</u>
③ 공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6. (현행 제15호와 같음) ③ ----- -----.

1. <u>검찰 사건처리기준, 양형정보 시스템의 운용, 구형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u>	<u><삭 제></u>
2. <u>양형기준의 정립·개선에 관한 사항</u>	<u><삭 제></u>
3. <u>양형조사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u>	<u><삭 제></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u>국민참여재판 등 공판 및 양형조사 관련 연구·교육에 관한 사항</u>	<u><삭 제></u>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8. 「 <u>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3조에 따른 <u>소송행위의 승인</u> (이하 “승인사무”라 한다)에 <u>관한 사항</u>	<u><삭 제></u>
9. ~ 11. (생략)	9.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2. <u>상고사건의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u>
<u><신 설></u>	13. <u>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u>
<u><신 설></u>	14. <u>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u>

④ (생 략)

제12조(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차장
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 (생
략)

② 제1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
라 두는 부 중 형사제1부·형사
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
·형사제5부·형사제6부·공판
제1부 및 공판제2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③ 제2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
라 두는 부 중 형사제7부·형사
제8부·조사제1부·조사제2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제
3부·공판제4부·공판제5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
을 보좌한다.

④ 제3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
라 두는 부 중 공공수사제1부·
공공수사제2부·형사제9부·형
사제10부·형사제11부·형사제
12부 및 형사제13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⑤ 제4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
라 두는 부 중 반부패수사제1부

사항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차장
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 (현
행과 같음)

② -----
----- 인권보호부·형사
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
·형사제4부·형사제5부·공판
제1부 -----
-----.

③ -----
----- 형사제6부·형사
제7부·형사제8부·형사제9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제
3부·공판제4부 및 공판제5부-----
-----.

④ -----
----- 공공수사제1부·
공공수사제2부·형사제10부·
형사제11부·형사제12부·형사
제13부·형사제14부 및 사무국
-----.

⑤ -----
----- 반부패·강력수사

· 반부패수사제2부 · 강력범죄
형사부 · 경제범죄형사부 · 공정
거래조사부 및 범죄수익환수부
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
좌한다.

⑥ · ⑦ (생략)

제13조(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서울중앙
지방법검찰청에 공공수사제1부,
공공수사제2부, 형사제1부, 형
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형사제7
부, 형사제8부, 형사제9부, 형사
제10부, 형사제11부, 형사제12
부, 형사제13부, 반부패수사제1
부, 반부패수사제2부, 조사제1
부, 조사제2부, 강력범죄형사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
부, 범죄수익환수부, 여성아동
범죄조사부, 공판제1부, 공판제
2부, 공판제3부, 공판제4부 및
공판제5부를 둔다.

<신설>

제1부, 반부패 · 강력수사제2부,
반부패 · 강력수사협력부, 경제
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 --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
----- 인권보호부, 공공
수사제1부-----

----- 형사제14
부, 반부패 · 강력수사제1부, 반
부패 · 강력수사제2부, 반부패 ·
강력수사협력부-----

② 인권보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법원이 발부하는 감정유

③ (생 략)

④ 형사제1부장 · 형사제2부장 · 형사제3부장 · 형사제4부장 · 형사제5부장 · 형사제6부장 · 형사제7부장 · 형사제8부장 · 형사제9부장 · 형사제10부장 · 형사제11부장 · 형사제12부장 및 형

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기록송부 사건(송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 수사중지 기록송부 사건(시정조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4항에서 규정한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③ (현행과 같음)

④ 형사제1부장 · 형사제2부장 · 형사제3부장 · 형사제4부장 · 형사제5부장 · 형사제6부장 · 형사제7부장 · 형사제8부장 · 형사제9부장 · 형사제10부장 · 형사제11부장 · 형사제12부장 · 형사

사제13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1.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생략)

⑤ 삭제

⑥ 반부패수사제1부장 및 반부패수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제13부장 및 형사제14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 또는 기록송부 받은 사건

나. 「검찰청법」 제4조제1항 제1호가목의 범죄 중 고소를 받아 수리한 경제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

다. 「검찰청법」 제4조제1항 제1호나목 및 다목의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

2. (현행과 같음)

⑥ 반부패·강력수사제1부장 및 반부패·강력수사제2부장----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1. 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나. (생략)

<신설>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

2. ~ 4. (생략)

⑦ 조사제1부장과 조사제2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1. 일반 형사사건과 고소·고발·진정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강력·마약 관련 범죄

라. ----- 가목부터 다목까지-----

2. ~ 4. (현행과 같음)

⑦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수사·처리 및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나. 중요 기업범죄

다. 강력·마약 관련 범죄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중요 범죄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

⑧강력범죄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형사사건과 강력·마약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⑨ ~ ⑯ (생략) 제14조(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 (생략) ②제1차장검사는 제15조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외사범죄형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③제2차장검사는 제15조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수사부, 강력범죄형사부, 공판제1부, 공판제	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삭 제> ⑨ ~ ⑯ (현행과 같음) 제14조(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권보호부·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 ----- -----. ③----- ----- 공공·외사수사부, 반부패·강력수사부-----
--	---

2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④ (생략)

제15조(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부산지방검찰청
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
제3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
공수사부, 강력범죄형사부, 외
사범죄형사부, 공판제1부 및 공
판제2부를 둔다.

<신설>

③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
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
하고, 형사제3부장은 같은 조
제4항·제6항·제7항 및 제16
조의6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
장이 정한다.

④ (생략)

⑤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
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공공·외사수사부, 반부패·강
력수사부-----
-----.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
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
의 사항을 분장하고, 각 부장 간
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
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공공·외사수사부장은 제13
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형사사건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⑥ 삭 제 ⑦ <u>강력범죄형사부장은 제13조 제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u> ⑧ 삭 제 ⑨ <u>외사범죄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일반 형사사건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u> 2. <u>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u> 3. <u>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u> ⑩ (생략) 제16조(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 (생략) ②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2에	2. <u>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u> 3. <u>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u> ⑦ <u>반부패·강력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u> <u><삭 제></u> ⑩ (현행과 같음) 제16조(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1부 · 형사제2부 · 형사제3부 · 형사제4부 · 형사제5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③ · ④ (생략)

제16조의2(대구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대구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형사부, 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를 둔다.

<신설>

③ 형사제1부장 · 형사제2부장 · 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형사제5부장은 같은 조 제3항 · 제4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④ (생략)

⑤ 삭제

⑥ 반부패수사부장은 제13조제6

----- 인권보호부 · 형사제1부 · 형사제2부 · 형사제3부 · 형사제4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대구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

-- 형사제4부장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

④ (현행과 같음)

⑥ 반부패수사부장은 다음 사항

항 및 제16조의6제4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강력범죄형사부장은 제13조 제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생략)

제16조의3(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나. 중요 기업범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⑦ 강력범죄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형사사건과 강력·마약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
무) ① (생 략)

②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4제1
항에 따른 부 중 형사제1부·형
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
부·형사제5부·형사제6부(인
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외
사범죄형사부(인천지방검찰청
에 한정한다)·여성아동범죄조
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4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6부(수
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형
사제7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
정한다), 공공수사부(수원지방
검찰청에 한정한다), 강력범죄
형사부, 방위사업·산업기술범
죄형사부(수원지방검찰청에 한
정한다), 공판송무제1부(수원지
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공판부를
말한다), 공판송무제2부(인천지
방검찰청에 한정한다) 및 사무
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④ (생 략)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
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
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
외사범죄형사부(인천지방검찰
청에 한정한다) 및 여성아동범
죄조사부-----

-----.

③ -----
----- 형사제6부-----

----- 강력범죄형
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
다)-----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들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인천
 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형사
 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형사제7
 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
 범죄형사부, 외사범죄형사부,
 공판송무제1부 및 공판송무제2
 부를 두며, 수원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
 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
 제6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
 공수사부, 방위사업·산업기술
 범죄형사부, 강력범죄형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신 설>

②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장·형사제2부장·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과 수원지방검
 찰청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
 장·형사제3부장·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4항
 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인
 천지방검찰청 형사제7부장 및

제16조의4(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들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인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
 제1부----- 여성
 아동범죄조사부-----

 ----- 수원지방검찰
 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 방위사업·
 산업기술범죄형사부 -----
 -----.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
 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

 -----인
 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을 포함한다)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③·④ (생략)

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7부장은 제13조제3항·제4항·제6항·제7항 및 16조의6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4항·제6항·제7항 및 제16조의6제4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생략)

⑦ 강력범죄형사부장은 제13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⑧ 외사범죄형사부장은 제15조제9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청 형사제6부장-----

-----.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3항·제4항 및 16조의2제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4항·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 제16조의2제7항-----
--.

⑨ 외사범죄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형사사건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⑨ (생 략)

제16조의5(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 (생 략)

②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6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6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6부·형사제7부·금융조사제1부·금융조사제2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④ (생 략)

제16조의6(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형사제6부·형사제7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부·금융조사제1부 및 금융조사제2부를 둔다.

<신 설>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16조의5(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인권보호부·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
-----.

③ -----
----- 형사제6부·금융조사제1부·금융조사제2부 -----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6(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형사제6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부·금융조사제1부 및 금융조사 제2부를 둔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② 형사제1부장 · 형사제2부장 · 형사제3부장 · 형사제4부장 · 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형사제7부장은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공판부장은 같은 조 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③ · ④ (생략)

제16조의7(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광주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형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신설>

② 형사제1부장 ·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형사제4부장은 같은 조 제3항 · 제4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③ 형사제1부장 · 형사제2부장 · 형사제3부장 ·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

-- 형사제6부장은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까지-----

----- 제13조제16항-----

-----.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6조의7(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 반부패 · 강력수사부 -----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③ (생략)

④ 삭제

⑤ 반부패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 및 제16조의6제4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강력범죄형사부장은 제13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⑦ (생략)

제16조의8(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대전
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형사
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
·형사제5부·여성아동범죄조
사부·특허범죄조사부 및 공판
부를 두고, 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
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
형사제4부·형사제5부(울산지
방검찰청에 한정한다) 및 공판
송무부를 둔다.

<신설>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반부패·강력수사부장-----
---- 제16조의6제5항-----
-----.

<삭제>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의8(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
----- 인권보호부·형사
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
·형사제4부·여성아동범죄조
사부·특허범죄조사부 -----

-----.

② 대전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
장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
항을 분장한다.

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서울 동부지방법검찰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형사제6부장 및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형사제5부장은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③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 형사제2부장 · 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형사제5부장은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④ 의정부지방법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 형사제2부장 · 형사제3부장 ·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

-----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

-----.

③ -----

-----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

-----.

④ -----

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⑤ 청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형사제3부장은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⑥ 춘천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형사제2부장은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

-----.

⑤ -----

-----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3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

-----.

⑥ -----

-----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3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

-----.

⑦ ~ ⑩ (생략)

<신설>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6조의10(지방검찰청 마지막 순

위 형사부의 분장사무) ①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서

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수

원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대전

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대구지

방검찰청 형사제4부, 울산지방

검찰청 형사제5부, 창원지방검

찰청 형사제4부, 광주지방검찰

청 형사제4부, 전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 청주지방검찰청 형

사제3부, 춘천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및 제주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의 분장사무 중 제13조제4

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검

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건으로 한정한다.

② 검찰총장은 제1항의 승인과

관련하여 수사단서 확보 과정의

적정성, 사건 내용의 공익성, 검찰 수사의 적합성 및 입증자료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 착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되, 수사 여건과 사건의 성격을 감안하여 다른 전담부서 또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거나 다른 기관에 수사지휘 또는 이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승인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검찰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의10(수원지방법검찰청 안산지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생략)
 ② 의정부지방법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법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법검찰청 성남지청, 수원지방법검찰청 안산지청, 수원지방법검찰청 안양지청, 대구지방법검찰청 서부지청, 부산지방법검찰청 동부지청, 부산지방법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법검찰청 순천지청의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3항, 제

제16조의11(수원지방법검찰청 안산지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광주지방법검찰청 순천지청의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

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검사장”은 “지청장”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④ (생략)

4항에 규정된 사항-----

----- . <후단 삭제>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지청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각 지청(다만, 복수의 형사부를 두는 지청의 경우에는 마지막 순위의 형사부에 한한다)으로 하여금 제16조의10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지청의 당해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 필요성이 인정될 것

2. 해당 지청 수사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당해 범죄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

⑤ 제16조의10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지청의 검찰총장 승인에 준용한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u>제16조의11</u> (생략)	<u>제16조의12</u> (현행 제16조의11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8